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5~6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2903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주요 Q&A



2026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주요 Q&A

【제도일반】

Q1

선착순으로 신청(접수)받아 지원하나요?
(육성자금 한도가 남아 있나요?)

-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지 않고, 신청기업 모두를 평가하여(점수화)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함

※ 기존에는 접수순으로 기준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방식이었음(평가제 도입 : 일반자금 → '24년, 특별자금 → '26년)

Q2

직접 대출이 가능한지?

- 가능하지 않음. 은행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방식(이자 일부 지원방식)임

※ (직접대출 건의 시 답변) 道 재원 추가 투입, 부실 관리 등의 애로로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람(종합적인 검토 필요한 사안임)

Q3

육성자금 승인은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대출실행이 안되면 이차보전도 불가하오니, 반드시 은행 상담 후에 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람

Q4

협약은행 중 부산에 있는 지점에서도 상담 가능한지요?

- 협약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에서 가능한데, 농협은 중앙회 소속만 가능함 (단위농협은 불가)

※ 협약 은행(대출 가능 금융기관) : 14개 은행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Q5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에 있던 대출 대환 가능하나요?

○ 네, 가능하며, 대출 취급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함.

단,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존에 받은 정책자금은 대환은 불가함

※ 예외 :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지원된 C1, C2 대출자금은 가능

Q6

시설설비자금의 경우, 기존에 있던 대출을 대환할 수 있나요?

○ 시설설비자금과 특별자금에 대해서는 대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신규 대출만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Q7

은행상담확인서 상 모든 내용을 다 기재해야 하나요?

○ 네, 자료 작성 시 모든 부분을 다 기재해 주시길 바람.

단, 은행상담확인서와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일치해야 함

Q8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늦어져 신청기간 안에 제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경우 신청기간 이후에 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 불가함. 모든 서류는 신청 기간 안에 제출된 서류만 인정됨

※ 창업기업확인서는 발급까지 통상 10일 정도 소요(신청 전 미리 구비 필요)

Q9

표준재무제표확인원 자료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 불가함.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만 인정됨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vs 표준재무제표확인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표준재무제표확인원
국세청 발행 공식 증명서로 신고한 재무제표가 국세청에 제출된 표준재무제표와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법적 증명서)	재무제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로,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세무사나 회계사가 검증했다는 서류(확인용 서류)

Q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분 기준은 귀속연월 기준인가요?

○ 네, 귀속연월 기준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됨

※ 귀속연월 vs 지급연월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개념	해당 급여가 발생한 기간 의미	급여가 실제 지급된 날짜 의미
신고 원칙	- 통상 급여가 지급되는 월에 해당 세금 신고 -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귀속월에 해당하는 원천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Q11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일 경우, 대표자 서명(날인)이 필요한 서류에 모든 대표자 서명(날인)이 필요한가요?

○ 네,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일 경우 서명란에 모두 서명해 주셔야 함

Q12

본인 인증은 대표님 번호로만 진행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음. 대표 또는 담당 직원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셔도 상관없음.

단, 인증한 핸드폰 번호로 조회를 하셔야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Q13

'25. 2월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 확인서상 기업 구분이 소기업(소상공인)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은 기재되어 있으나,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나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됨

※ 접수기한 내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신청자격】

Q14

중소기업확인서상의 소기업(소상공인) 되어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소기업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에 ①제조업이 명기 되어있고, 재무제표증명원 상에 ②제품매출액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함

* 영업이나 사업의 실태를 줄인 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며, 업태가 세분화 된 것이 업종임

- 단, 특별자금 지식문화서비스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Q15

공고문에 정부 등의 정책자금 용자 등 지원실적이 100억(누적)을 초과하면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100억원 초과 여부를 은행이나 기업체에서 확인 가능한지요?

○ 불가함. 육성자금 담당자가 중기부 누리집에 들어가서 확인하여 답변드릴

Q16

본사가 부산에 있고 사업장이 창원에 소재한다면, 신청 가능한지요?

○ 자금 종류별로 다름

○ 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특별자금)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와 사업장 모두 경남에 소재해야 하나,
시설설비자금은 앞으로 경남에 사업장(공장 등 시설투자)을 둘 예정으로 자금 사용처(투자처)가 도내이면 가능함

Q17

부채비율은 일반 경영안정자금만 해당사항 인가요?

- 네,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은 부채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시설설비자금과 특별자금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음

< 지원 제외대상 >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평가 및 자금 승인】

Q18

최근 연도 창업기업은 부채비율과 매출액이 없는데, 점수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창업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배점을 300% 이상, 매출액 배점을 30억 미만으로 적용하여 평가함

Q19

정량평가 지표에서 4년간 승인 횟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담당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Q20

심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심사 결과는 신청 시 기재한 대표님 **휴대폰 번호 및 신청담당자로** 일괄적으로 문자(선정 또는 탈락 여부)를 보내드리며, 전화로 문의하실 경우에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Q21

자금 승인 통보받은 이후 업체 사정에 의해 취소 가능한지요?

- 자금승인 취소가 불가함

Q22

은행에서 기업체에서 승인서 출력해오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자금지원 승인서는 대출을 위한 서류로

기업에선 발급되지 않고, 육성자금 신청 당시 상담받은 은행에서 출력함

※ 출력방법(은행 담당자 질문)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이트(은행전용)에서 은행회원 가입 신청 이후 출력 가능(출력방법은 지점에서 승인 시 매뉴얼 다운로드 받아 처리)

Q23

자금 승인 이후 대출 은행 변경이 가능한가요?

- 대출 취급 전 1회 한하며,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승인한 후에 가능함

※ 신청방법 : 협약 은행에서 육성자금 누리집으로 신청(공고문 서식6~7 작성)

Q24

대출 취급기한 연장은 가능한가요?

- 대출 취급기한 만료 전 경영안정자금은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

시설설비자금 역시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함

※ 신청방법 : 협약 은행에서 육성자금 누리집으로 신청(공고문 서식6 작성)

【경영안정자금】

Q25

작년에 10억원 승인받았는데, 또 10억 가능한가요?

- 지원한도는 누적 개념으로 작년에 경영안정자금을 10억 승인받았을 경우, 자금승인 한도 10억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자금 승인은 불가함

※ 당초 대출 상환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근 4년 이내 자금 승인을 받은 횟수가 많을 시에는 배점이 낮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규 신청업체 우선 기회부여 등 형평성 고려)

Q26

그럼 조기상환하고 다시 신청하면 승인받을 수 있나요?
(조기상환 시 한도가 전부 다 살아나나요?)

- 복원되지 않음.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됨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한도

- ❖ (지원대상)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중소기업
- ❖ (지원한도) 업체당 10억원 이내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특별자금도 적용됨)
 - ※ 2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4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부채비율 150% 미만 신청불가(단, 창업기업, 1억 이하 신청기업 미적용)
 -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에만 해당
- ❖ (자금용도)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인건비, 자재비, 제조경비, 기술개발 등)
-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재무지표 평가 점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원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2년 (2년 거치 일시상환)	재무지표 평가 점수			재무지표 평가 점수		
	14~22점	23~28점	30점	14~22점	23~28점	30점
3년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1.2%/연	1.4%/연	1.6%/연	1.7%/연	1.9%/연	2.1%/연

Q27

이차보전율은 몇 % 인가요?

- 최대 2.1%까지 지원 가능하며,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문 참조

【시설설비자금】

Q28

땅을 매입하는데 시설자금 사용가능한가요?

- 단순 토지 매매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하며, 매매자금 신청 시 공장과 토지를 같이 구입하는 경우는 가능.

단, 건축자금 신청 시에는 건축비용만 신청대상임 ※ 시설설비자금 지원대상 및 한도

- ❖ (지원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 ❖ (지원한도) 업체당 20억원 이내 ※ 신청일 기준 '계약서상 미지급액'에 한해 지원
- ❖ (자금용도)

자금용도	세부내용
건축·임차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매입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기계설비***

* 건축물대장의 주 용도, 건축허가서의 용도가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중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또는 된) 시설

** 건축물대장의 주 용도, 건축허가서의 용도가 사무실(소), 창고, 소매·판매점(건축·매입·임대 공통사항)

*** 고정시설물 기계장치를 말하며, 기후대비 설비 포함(태양광, 비상 전력·UPS, 배수방수 시설, 환기·냉난방 개선 장치, 내진·내풍 보강 시설 등), 차량운반구는 불가, / 신청조건 : 신청 합계 5천만 원 이상

-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1.5%/연	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0.95%/연	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0.75%/연	1.0%/연

- ❖ (주의사항)

- ▶ 토지에 대한 건축·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
- ▶ 기계설비의 경우, 신청 합계 금액 전체 5천만 원 이상(부가세 제외)인 경우 신청 가능
- ▶ 부동산 건축 및 매입 자금 신청 시, 신청 업체와 허가·계약 업체가 동일해야 함
※ 단, 건축허가의 승계가 완료된 경우 예외 인정
- ▶ 건축자금의 경우 신청업체와 건설 도급업체가 동일하거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지원 불가
- ▶ 건축자금의 경우 설계비 포함하며, 기계설비자금의 경우 설치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 ▶ 육성자금 승인 이후에는 최초 승인된 자금 용도 외의 사용 금지
※ 단, 매입의 경우 최초 승인 건물 공장 부지에 기존 매입 건물을 철거하고 신규 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시설 변경 승인(서식 제6호와 함께 제출)

Q29

자동차 수리공장(건축물대장 용도 : 자동차 관련시설)을 인수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건축물대장과 건축허가서 지원 범주만 지원 가능

Q30

공장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건축허가가 아직 미완료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 지원 불가함

Q31

아직 건축허가를 못받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기한 내 건축허가서, 건축도급계약서, 설계도면은 반드시 들어와야 심사가 가능하며, 서류 미비 시는 결격사유가 됨

※ 시설설비자금은 접수기간 내 관련서류 제출 완료 필수

Q32

건물 신축을 하려는데, 설계비도 포함이 되나요?

○ 네, 설계비도 포함됨

Q33

건축을 완료하였는데 해당 부분도 지원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 계약서상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심사 가능하나, 완료된 부분은 지원 안 됨

Q34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차 가능한가요?

○ 임차 불가함. 단, 기업자 부담비율 이내는 가능

(예) 시설가액 10억 원인 공장 매입(총 연면적 1,000㎡)을 위해 8억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공장을 부분 임대(임대면적 210㎡) 하고 있는 경우(남아있는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text{도 자금 대출 잔액 } 8\text{억 원} \div \text{시설가액 } 10\text{억 원})] \times 100$

▶ 건축물임대비율(21%) = $[\text{임대면적 } 210\text{㎡} \div \text{건물 총 연면적 } 1,000\text{㎡}] \times 100$

⇒ 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 조치